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업무지침

2판

2026. 5. 29.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구분	기존(감염병예방법)	변경(피해보상 특별법)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26.~'24.6.30.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의(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2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기회 없음
진료비 · 간병비 · 장애인 일시 보상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신청자는 피접종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사망일시 보상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자)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없음을 안내
시·도자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출 및 청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와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6),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7)를 제출할 수 있음

기피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8)를 제출할 수 있음
기간 연장 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산정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5)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질병관리청) 하거나 이 외 전자 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성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업 · 시간근접등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위로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인불명 위로금 - 시간근접 위로금 - 특이경과 등 사망위로금

주요 개정사항

항 목	1관	2관	개정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기존(감염병예방법)</th> <th>변경(피해보상 특별법)</th> </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 <td>· 코로나19 예방접종</td> <td>·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td> </tr> <tr> <td>피해보상 신청 기한</td> <td>·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td> <td>·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td> </tr> <tr> <td>이의신청 횟수</td> <td>· 이의신청 2회 가능</td> <td>·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td> </tr> <tr> <td>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td> <td>-</td> <td>·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td> </tr> <tr> <td>사망일시 보상금</td> <td>-</td> <td>·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td> </tr> <tr> <td>시·도저체 심의</td> <td>·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td> <td>·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td> </tr> <tr> <td>의견 제출 및 철회</td> <td>-</td> <td>·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의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1)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할 수 있음</td> </tr> <tr> <td>기피신청</td> <td>-</td> <td>·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3)를 제출 할 수 있음</td> </tr> <tr> <td>기간 연장 통지</td> <td>-</td> <td>·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22)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td> </tr> <tr> <td>지원 사업</td> <td>·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td> <td>·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감염병예방법)	변경(피해보상 특별법)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 2회 가능	·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	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사망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	시·도저체 심의	·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	·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출 및 철회	-	·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의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1)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할 수 있음	기피신청	-	·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3) 를 제출 할 수 있음	기간 연장 통지	-	·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22)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 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	지원 사업	·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	·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	<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기존(감염병예방법)</th> <th>변경(피해보상 특별법)</th> </tr> </thead> <tbody> <tr> <td>예방접종</td> <td>· 코로나19 예방접종</td> <td>·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td> </tr> <tr> <td>피해보상 신청 기한</td> <td>·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td> <td>·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td> </tr> <tr> <td>이의신청 횟수</td> <td>· 이의신청 2회 가능</td> <td>·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td> </tr> <tr> <td>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td> <td>-</td> <td>·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td> </tr> <tr> <td>사망일시 보상금</td> <td>-</td> <td>·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td> </tr> <tr> <td>시·도저체 심의</td> <td>·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td> <td>·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td> </tr> <tr> <td>의견 제출 및 철회</td> <td>-</td> <td>·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와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0)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할 수 있음</td> </tr> <tr> <td>기피신청</td> <td>-</td> <td>·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0)를 제출 할 수 있음</td> </tr> <tr> <td>기간 연장 통지</td> <td>-</td> <td>·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13)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td> </tr> <tr> <td>지원 사업</td> <td>·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td> <td>· 사당위로금 등 지원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td> </tr> </tbody> </table>	구분	기존(감염병예방법)	변경(피해보상 특별법)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 2회 가능	·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	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사망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	시·도저체 심의	·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	·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출 및 철회	-	·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와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0)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할 수 있음	기피신청	-	·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0) 를 제출 할 수 있음	기간 연장 통지	-	·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13)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 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	지원 사업	·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	· 사당위로금 등 지원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	<p style="text-align: center;">서식번호 등 수정</p>
	구분	기존(감염병예방법)	변경(피해보상 특별법)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 2회 가능	·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																																																																			
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사망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																																																																			
시·도저체 심의	·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	·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출 및 철회	-	·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의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1)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할 수 있음																																																																			
기피신청	-	·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3) 를 제출 할 수 있음																																																																			
기간 연장 통지	-	·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22)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 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																																																																			
지원 사업	·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	·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																																																																			
구분	기존(감염병예방법)	변경(피해보상 특별법)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 '21.2.26.~'26.3.31. 내에 접종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규신청: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재이의신청)에 관한 특약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횟수	· 이의신청 2회 가능	· 이의신청 1회 가능 · 재심(재이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가능 없음																																																																			
진료비, 간병비, 장례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피고용자 본인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사망일시 보상금	-	· 보상신청자는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 수령 대상으로 후순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권 있음을 안내																																																																			
시·도저체 심의	· 본인부담금 제외된 미연소액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 심의 가능	·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보상위원회, 재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견 제출 및 철회	-	· 보상청구 시 필수구비서류와 함께 필요 시 의견제출서(서식 10) 의견 철회 신청서(서식 11)를 제출할 수 있음																																																																			
기피신청	-	· 청구인용 위함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서(서식 10) 를 제출 할 수 있음																																																																			
기간 연장 통지	-	·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 연장 통지(서식 13) 송달 ·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 신청에서 제외 · 신청인이 간편신청서(서식 7) 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관송(예문)관리(가나)이 의 전자 파일 전송 기능에 의해 송출하는 방법으로 안내 가능																																																																			
지원 사업	· 관련장(의심질환) 지원사업(4-1) · 부검후 사인불명 위료금 지원사업 · 시간근로종 사당위로금 지원사업 (* 23.9월 한시적 확대 후 종료)	· 사당위로금 등 지원 · 사인불명 위료금 · 시간근로 위료금 · 특이결과 등 사당위로금																																																																			
<p style="text-align: center;">I.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p>	<p style="text-align: center;">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p> <p>◀ 신청 가능 요건 ▶ 1)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적인 경우 사망일을 증명 가능한 경우 또는 장애 판정을 인정받은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p> <p>·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리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또는 그 전까지 보건소 국장(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신규신청은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p> <p>◀ 신청 가능 요건 ▶ 1)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적인 경우 사망일을 증명 가능한 경우 또는 장애 판정을 인정받은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의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p> <p>·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심리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또는 그 전까지 보건소 국장(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 신규신청은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 가능 요건 명확화 및 가독성 제고</p>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라. 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유족 중 우선 순위자 <p>*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유족 각각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p> <p>*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p>	<p>라. 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이 결정된 경우: 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유족 중 우선 순위자 <p>*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p> <p>*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p> <p>※ 피접종자 사망 시,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p> <p>※ 동일한 보상대상자에 대해 확정된 보상액은 이전 수령인과 관계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지급 대상 명확화 · 행방불명 등 증명 시 증빙서류 필요 내용 추가 ·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 명확화 · 용어 통일 · 피접종자 사망 시 보상 가능 종류 명시 · 동일한 보상 대상자에 대해 지급 가능한 사항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신청자 <p>[진료비, 간병비 및 장애인일시보상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자(본인)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가능 <p>*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시행증명서 등) 및 제출 필요</p> <p>[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신청자 <p>[진료비, 간병비 및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자(본인)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p>*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시행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p> <p>[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역할 명확화 · 대리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 ·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보상금 청구 대상 및 지급 대상 명확화 · 우선순위 유족 입증 책임 대상 명시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동 순위 유족 중 1인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동 순위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균등 배분함</p> <p>- 우선순위 유족(보상대상자)이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 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 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p> <p>* 신청인과 본인(우선순위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p> <p>※ 보상금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우선 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우선순위 유족 여부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입증 해야함(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상금 수급 대상자에게 있음)</p>	
	<p>마. 보상업무 절차</p> <p>1) 피해보상 접수 및 조사</p> <p>1-1)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p> <p>1-2)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정규절차)</p> <p>○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 건의 보상 신청금액(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및 신청종류(진료비, 일시보상금**)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하고,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p> <p>* 피접종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p> <p>***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p18 참고)</p>	<p>마. 보상업무 절차</p> <p>1) 피해보상 접수 및 조사(※ 별도 소액심의 절차 없음)</p> <p><1-1, 1-2 구분 삭제></p> <p>○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 건의 보상 신청금액 및 신청종류**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하고,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p> <p>*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p> <p>***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p17 참고)</p>	<p>· 소액심의 관련 절차 삭제</p> <p>· 용어 통일 및 표현 명확화</p>



항 목	1관	2관	개정사유									
	<p>☞ 접수 시 확인사항</p> <p>① 특별법 해당기간(2021.2.26.~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p> <p>② 보상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p> <p>*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의 경우 본인,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선순위유족</p> <p>○ (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 (30만원이상[서식 2]” 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 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p> <p>※ 각 회차별로 공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까지 ① 공문요청, ②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보상 신청, ③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 되어야 함</p> <p><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p> <p>*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p> <p>※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예만 해당자료를 제출하며,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p>	<p>☞ 접수 시 확인사항</p> <p>① 특별법 해당기간(2021.2.26.~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p> <p>② 보상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p> <p>*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p> <p>○ (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 [서식 2]” 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 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p> <p>※ 각 회차별로 공문에 명시된 제출 기한까지 ① 공문, ②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 보상 신청, ③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p> <p><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p> <p>※ 모든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p> <p>* 보상신청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p> <p>※ ①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무기록 등) 제출</p> <p>예) 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후 사망하여 이의신청한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743 1756 1161 1957"> <thead> <tr> <th>구분</th> <th>특별법 이전</th> <th>특별법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유형</td> <td>진료비, 간병비</td> <td>사망일시 보상금</td> </tr> <tr> <td>제출 서류</td> <td>진료비, 간병비 의무기록</td> <td>기 제출한 자료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 받은 의무기록 추가 제출</td> </tr> </tbody> </table> <p>② 추가자료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와</p>	구분	특별법 이전	특별법 이후	신청 유형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 보상금	제출 서류	진료비, 간병비 의무기록	기 제출한 자료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 받은 의무기록 추가 제출	<p>· 신규신청 및 재심의 신청 가능한 명확화</p> <p>· 피접종자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하다는 내용 추가</p> <p>· 이의신청(재심의) 시 제출자료 예시 추가</p> <p><표></p> <p>· 신청종류별 서류 구분</p> <p>·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등 명칭 수정</p> <p>· 약제비 관련 제출 서류 추가(필요시)</p> <p>· 대리신청 표현 명확화 및 대리신청 시 제출 서류 추가</p> <p>· 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시 장애(장애) 증빙서류 상세내용 추가</p> <p>·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시</p>
구분	특별법 이전	특별법 이후										
신청 유형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 보상금										
제출 서류	진료비, 간병비 의무기록	기 제출한 자료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 받은 의무기록 추가 제출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청취 신청)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12]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의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및 청취 신청사유 등을 필수로 기재 ○ (위원 기피 신청) * 기피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청취 신청)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의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및 청취 신청사유 등을 필수로 기재 ○ (위원 기피 신청) * 기피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함 	
	<p>3)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보상 심의 - 심의절차: 질병관리청장은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필요시)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p>3)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반 조사 - (시·도) 신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서식 2]” 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 신청 건 전체에 대하여 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 보고 * 재심 신청 건은 필요시 피해조사반에서 조사 ※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 보상·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심의 - 심의절차: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조사반 조사 내용 추가 · 심의절차 내용 수정 · 서식번호 등 수정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 [서식 23], [서식 25] - 보상 결정된 경우 “12p 보상금 지급관리” 참조 -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의신청서[서식 24])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 [서식 14], [서식 16] - 보상 결정된 경우 “11p 보상금 지급관리” 참조 -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의신청서 [서식 15])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p>4) 결정기간 연장통지(필요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22]를 송달 하여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인이 간편수신동의서[서식 7]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하거나 이 외 전자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연장사실과 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음 	<p>4) 결정기간 연장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송달 하여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간편수신 동의) 신청인이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5]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이 외 전자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연장 사실과 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음 - (간편수신 미동의) 기간 연장 통지서 [서식 13]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 하여 안내 * 연장통지 결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내역-연장정보 (연장통지 완료 건인 경우 연장 정보에 ‘연장’ 으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부분 삭제 · 서식번호 수정 · 간편수신 동의 여부에 따른 안내방법 구분 및 연장통지 결과 확인 방법 추가
	<p>5)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시행일 이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p>5)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시행일 이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 기한 명확화 · 서식번호 수정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p> <p>* 심의결과(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p> <p>○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서식 24]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p>	<p>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p> <p>※ 이의신청(재심의) 접수를 위한 90일 산정기준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행정청 도달시점(보건소 서류 접수일)까지(단, 기간의 계산시 초일불산입)</p> <p>* 심의결과를 안 날(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p> <p>○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서식 15]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p>	
	<p>바. 보상금 지급 관리</p> <p>○ 보상금 지급(「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시행령 제2조)</p> <p>*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p>	<p>바. 보상금 지급 관리</p> <p>○ 보상금 지급(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특별법 제16조)</p> <p>*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차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p>	<p>관련 법령 내용 현행화</p>
	<p>사. 보상 기준(「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p> <p>○ 추가보상 가능 횟수는 제한 없음</p> <p>○ 보상금 사후관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3조)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 등의 과실 등 제3자의</p>	<p>사. 보상 기준(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6년 보상금액 추가</p> <p>※ 추가보상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추가 지급 여부 결정됨</p> <p>※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특별법 제16조)</p> <p>○ 보상금 사후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p>	<p>· 법령명 수정</p> <p>· 2026년 사망일시보상 금액 추가</p> <p>· 추가보상 지급 가능한 경우 명확화</p> <p>· 관련 법령 내용 현행화</p>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함</p> <p>-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p>	<p>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함</p> <p>-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가능</p>	
	<p>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위로금 지원사업</p> <p>나. 사업개요</p> <p>다. 사업내용</p> <p>1) 사인불명</p> <p>1-1) 부검 후 사인불명위로금</p> <p>1-2) 부검 미실시 사례 사인불명위로금</p> <p>2) 시간근접</p> <p>3) 특이경과 등</p> <p>라) 지원절차</p>	<p>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위로금 등 지원</p> <p>나. 지원내용</p> <p>1) 사인불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p>2) 시간근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p>*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교통, 추락, 익사, 화재, 자살, 타살 등)인 경우 제외</p> <p>3) 특이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다. 업무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결정) ○ (지원 대상자 통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사업 표현 삭제 · 특별법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 절차 정비 후 별도 안내 예정으로 업무절차 등 내용 수정
<p>II.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p>	<p>나.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 시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7] 내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p>나. 지원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 시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5] 내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번호 수정 · 지원절차 현행화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관련 안내,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을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공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변경) 	<p>관련 안내,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을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공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변경 구분 및 기존 내용 삭제 	
<p>III.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 전산시스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사.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4(시·도) ※ 소액일 경우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업로드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문자 발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수신 동의건인 경우 개인별 신청화면에서 피해보상 문자수신 동의 체크 2. 진행상태별 조회 3. 연장 상태 건 선택 4. 문자전송 누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사.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4(시·도) <삭제>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연장통지 관련 문자 발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소) 문자수신 동의 건인 경우 개인별 신청화면에서 피해보상 문자수신동의 체크 2) (질병관리청) 신청인별 조회 3) (질병관리청) 연장 상태 건 선택 4) (질병관리청) 문자전송 누르기 5) 연장정보 확인 <p>※ 연장정보가 ‘연장’ 으로 표시된 경우 연장통지 완료 상태임</p> <p>* 문자 발송일자는 엑셀다운로드-문자전송여부의 전송일자로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 관련 절차 삭제 · 문자 발송 관련 절차별 수행 주체 명확화 · 연장정보 확인 방법 추가 · 그림 수정
<p>서식</p>	<p><서식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 보고서(30만원이상)</p> <p><서식4>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p> <p><서식5>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p> <p><서식6> 위임장</p> <p><서식7> 간편수신 동의서</p> <p><서식8> 진료비 영수증 예시(원본)</p> <p><서식9> 진료비 세부산정내역</p> <p><서식10> 의무기록 사본</p> <p><서식11> 의견제출서</p>	<p><서식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 보고서(서식 일부 변경)</p> <p><서식4> 삭제</p> <p><서식5> 삭제</p> <p><서식4> 위임장(일부 문구 수정)</p> <p><서식5>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일부 변경)</p> <p><서식8> 삭제</p> <p><서식9> 삭제</p> <p><서식10> 삭제</p> <p><서식6> 의견제출서(서식 일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서류 서식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삭제 등 서식 내용 정비

항 목	1판	2판	개정사유
	<p><서식12> 의견 청취 신청서</p> <p><서식13> 기피신청서</p> <p><서식14>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p> <p><서식15> 진단서</p> <p><서식16> 사망진단서</p> <p><서식17>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p> <p><서식18>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p> <p><서식19> 예방접종증명서</p> <p><서식20>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p> <p><서식2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p> <p><서식22> 기간 연장 통지서</p> <p><서식2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p> <p><서식24>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p> <p><서식25>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p> <p><서식26>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직접수령 확인서</p> <p><서식27>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위로금 신청서</p> <p><서식28>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위로금 지원사업 계좌번호 제출 양식</p>	<p><서식7>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일부 변경)</p> <p><서식8> 기피신청서(서식 일부 변경)</p> <p><서식9>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p> <p><서식15> 삭제</p> <p><서식16> 삭제</p> <p><서식10>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p> <p><서식11>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 (서식 일부 변경)</p> <p><서식19> 삭제</p> <p><서식12>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p> <p><서식21> 삭제</p> <p><서식13> 기간 연장 통지서</p> <p><서식1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p> <p><서식15>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p> <p><서식16>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p> <p><서식17>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직접수령 확인서</p> <p><서식27> 삭제</p> <p><서식28> 삭제</p>	
부록	<p><부록1> 코로나19 백신의 인과성 인정 일반이상반응</p> <p><부록2> 자주 묻는 질문(FAQ)</p>	<p><삭제></p> <p><부록1> 자주 묻는 질문(FA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에 따른 인정 기준 변경에 따라 내용 정비 · 주요 질의응답 사항 등 내용 정비

〈 목 차 〉

I.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1. 목적	1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1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위로금 등 지원	14

II.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1. 목적	16
2. 지원체계	16

III.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전산시스템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17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연장통지 관련 문자 발송	22

[서 식]

서식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24
서식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	26
서식 3.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28
서식 4. 위임장	29
서식 5. 간편수신 동의서	30
서식 6. 의견제출서	31
서식 7.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	32
서식 8. 기피신청서	33
서식 9.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34
서식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35

서식 11.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	36
서식 12.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37
서식 13. 기간 연장 통지서	38
서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	39
서식 15.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40
서식 16.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41
서식 17.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직접수령 확인서	42

[부 록]

부록 1. 자주 묻는 질문(FAQ)	44
---------------------------	----

I.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1.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가.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단체),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나.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피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질병청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시·도에서는 행정 규칙 또는 자치 조례 등으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하여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보상

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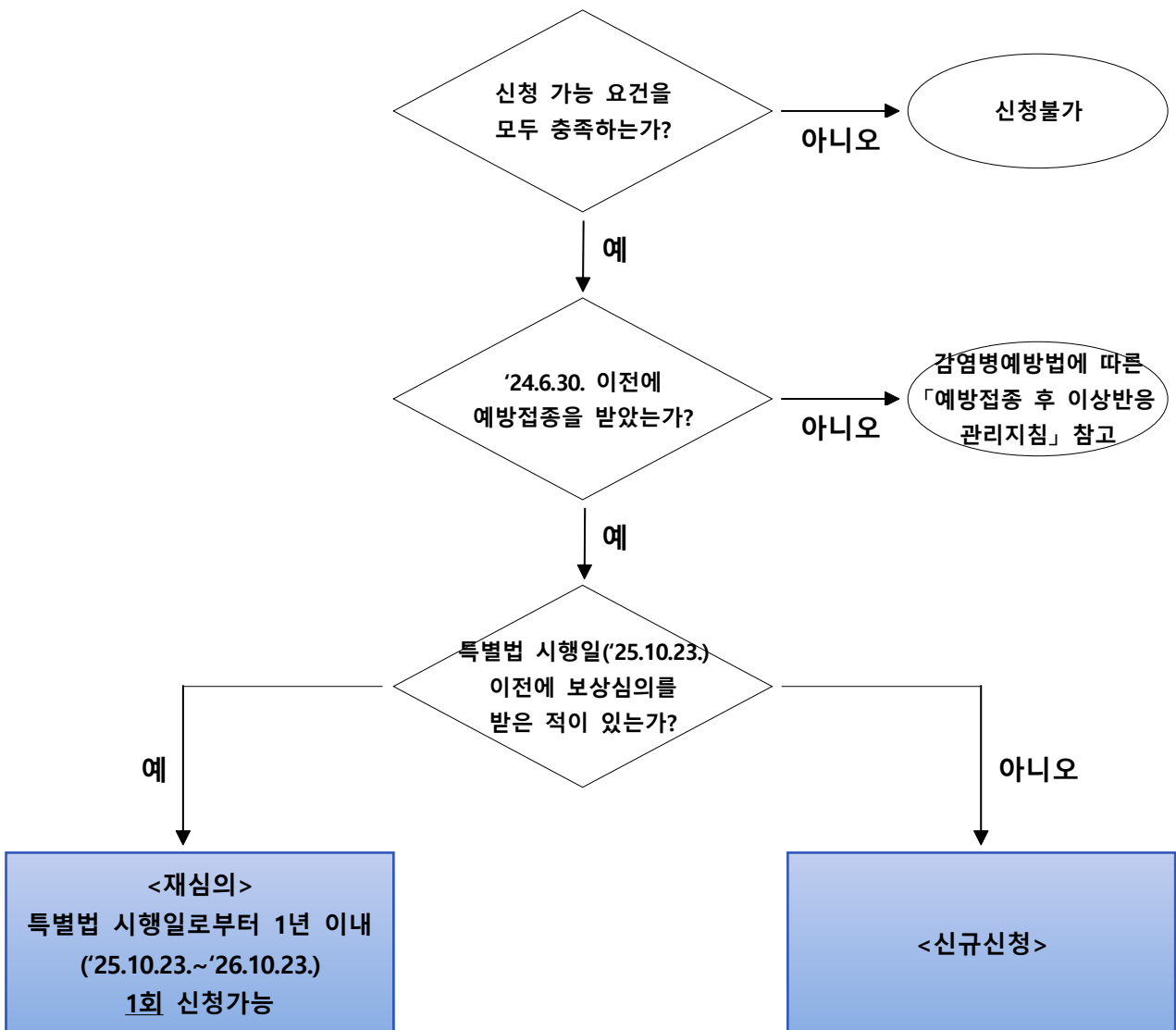
<신청 가능 요건>

○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이 처음인 경우

- (신규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인지?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봄
- ※ (재심의)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 인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 (특별법 부칙 제4조)
- 피해보상 신청 자격*이 있는지?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 대리 가능)
* 진료비·간병비: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 우선순위 유족

○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 신규신청의 경우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후 1회 이의신청(재심의)* 가능
*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후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함



라. 보상대상자 및 보상신청자

○ 보상대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본인)

- 임신 중인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

* 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이 결정된 경우(특별법 제5조제1항제3호)
: 대상자(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유족 중 우선 순위자

☞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 보상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피접종자 사망 시, 진료비 및 간병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음

※ 동일한 보상대상자에 대해 확정된 보상액은 이전 수령인과 관계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예정

○ 보상신청자

[진료비, 간병비 및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보상대상자(본인)

-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보상신청 대행*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 우선순위 유족(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

* 신청인과 대상자(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

** 우선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동 순위 유족 중 1인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동 순위 유족이 각각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균등 배분함

- 우선순위 유족(보상대상자)이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4]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신청인과 본인(우선순위 유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피해보상신청권 없는 자가 신청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청권 없음' 으로 안내

※ 보상금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우선순위 유족 여부는 보상금 수급 대상자가 입증 해야함(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보상금 수급 대상자에게 있음)

마. 보상업무 절차

1) 피해보상 접수 및 조사 (※ 별도 소액심의 절차 없음)

-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 건의 보상신청금액 및 신청종류**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하고,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사망 및 장애 관련 서류 제출하는 경우, 일시보상금 신청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필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시스템에 신청정보 입력(p17 참고)

☞ 접수 시 확인사항

- ① 특별법 해당기간(2021.2.26.~2024.6.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 ② 보상신청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본인** /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

- (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서식 2]” 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각 회차별로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① 공문, ②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한 피해보상 신청, ③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보상신청권자 구비서류 > ※ 모든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보상신청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6.10.23.)에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다만,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

** 보상신청은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①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의무기록 등) 제출 예) 진료비,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를 받은 후 사망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구분	특별법 이전	특별법 이후
신청유형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제출서류	진료비, 간병비 의무기록	기 제출한 자료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료 받은 의무기록 추가 제출

② 추가자료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동의서(기제출시 생략 가능)만 제출하여 보상신청 가능

<p>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p>	<p>① (신규신청·추가보상 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1부 [서식 3]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p> <p>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p> <p>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p> <p>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필요시 약제비 영수증 원본 1부</p> <p>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사본 1부 * 필요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사본 1부</p> <p>⑥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⑦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4]</p> <p>⑧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p> <p>⑨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5]</p> <p>⑩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6]</p> <p>⑪ (선택)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p> <p>⑫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8]</p>
<p>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p>	<p>① (신규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청구서 1부 [서식 9]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p> <p>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등급표에 따른 장애(장해)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예: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심사결정통지서(질병명, 심사내용 등 상세조건 필수포함) 등)</p> <p>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장애 등급을 진단받기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p> <p>④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4]</p> <p>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p> <p>⑦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5]</p> <p>⑧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6]</p> <p>⑨ (선택)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p> <p>⑩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8]</p>
<p>사망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p>	<p>① (신규신청)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 1부 [서식 9] -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p> <p>② 사망진단서 1부</p> <p>③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시까지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지와 검사결과 포함)</p> <p>④ 보상금 신청인이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반드시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출 필요(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p> <p>⑤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 [서식 4]</p> <p>⑥ (신청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며,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p> <p>⑦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 1부 (부검소견서(부검감정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 다만, 1)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와 2)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p> <p>⑧ 간편수신 동의서 [서식 5]</p> <p>⑨ (선택) 의견제출서 [서식 6]</p> <p>⑩ (선택)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 [서식 7]</p> <p>⑪ (선택) 기피신청서 [서식 8]</p>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지자체 구비서류 >

시·군·구	①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 [서식 1] ③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 10] ④ 의료기관 진료비내역 확인서 [서식 11] - 사망 일시보상금만 신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 ⑤ 과거예방접종력(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증명서로 같음 가능) ⑥ (필요시) 백신 보관 장비의 온도기록 일지 [서식 12] - 사본 또는 원본대조필 / 사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도장 또는 날인 필요 ⑦ (필요시) 약품보관증(봉인의약품 시)
시·도	① 보상신청자 제출서류 ② 시·군·구 제출서류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보고서[서식 2] * 피해조사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역학조사 결과” 란에 필수 업로드

2) 의견 제출 및 의견 청취(필요시)

- **(의견제출)** 청구인은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의견제출서[서식 6]를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청취 신청)** 청구인이 담당 의료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경우 보상청구시 필수 구비서류와 함께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신청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청취 대상자의 소속기관, 성명, 연락처 및 청취 신청사유 등을 필수로 기재
 - ※ 의견청취 신청에 따른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절차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
- **(위원 기피 신청)**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기피신청서[서식 8]에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유* 등을 적어 피해보상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필수로 첨부
 - * 기피 사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기피사유가 관계 법령 및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연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7. 위원과 신청인 간에 개인적 친분 또는 갈등이 있는 경우
8.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특정집단(학·협회, 대학, 의료기관, 단체 등)과 신청인 간에 재정적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3)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

○ 피해조사반 조사

- (시·도) 신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서식 2]” 를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각 회차별 안내되는 공문에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특별법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 신청 건 전체에 대하여 피해조사반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피해보상(재심)위원회에 보고

* 재심 신청 건은 필요시 피해조사반에서 조사

※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심의

- 심의주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 *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 연장 시 청구인에게 기간 연장 통지서를 송달하여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 기간 등을 통지
- 심의절차: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심의결과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지 [서식 14], [서식 16]
- 보상 결정된 경우 “11p 보상금 지급관리” 참조
-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서식 15]) 또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

*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이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 제외)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

4) 결정기간 연장통지

-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심의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 결정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함

*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나 연장을 통보하여야 함

- (간편수신 동의) 신청인이 간편수신동의서[서식 5]를 작성한 경우, 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이 외 전자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연장 사실과 기간 등을 안내할 수 있음

- (간편수신 미동의) 기간 연장 통지서[서식 13]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여 안내

* 연장통지 결과 확인: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개인별 피해보상 신청내역-연장정보(연장통지 완료 건인 경우 연장정보에 '연장'으로 표시)

5)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일 이후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

※ 이의신청(재심의) 접수를 위한 90일 산정기준

: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행정청 도달시점(보건소 서류 접수일)까지(단, 기간의 계산시 초일불산입)

* 심의결과를 안 날(이의신청시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의거)

-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제기 가능하며 **1회 가능**

*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특별법 부칙 제4조)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서[서식 15]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바. 보상금 지급 관리

- 보상금 지급(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특별법 제16조)
 - 각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보상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
 -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상세보기-계좌정보
 - 질병관리청은 보상대상자 및 계좌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
 -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사. 보상 기준(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구분	지급 기준																												
진료비	- 환자 본인부담금: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간병비	- 예방접종피해와 관련하여 입원 치료한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정액) - 응급실, 격리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등 입원 시 정액간병비 미지급																												
장애인 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은 100분의 100 지급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에 국가가 장애 등급이나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 지급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더 이상의 진료비 지급은 하지 않음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사망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적 용 기 간</th> <th>사망일시보상금(원)</th> <th>월최저임금액(원)</th> <th>시간급 최저임금(원)</th> </tr> </thead> <tbody> <tr> <td>2021.1.1.~2021.12.31.</td> <td>437,395,200</td> <td>1,822,480</td> <td>8,720</td> </tr> <tr> <td>2022.1.1.~2022.12.31.</td> <td>459,465,600</td> <td>1,914,440</td> <td>9,160</td> </tr> <tr> <td>2023.1.1.~2023.12.31.</td> <td>482,539,200</td> <td>2,010,580</td> <td>9,620</td> </tr> <tr> <td>2024.1.1.~2024.12.31.</td> <td>494,577,600</td> <td>2,060,740</td> <td>9,860</td> </tr> <tr> <td>2025.1.1.~2025.12.31.</td> <td>503,104,800</td> <td>2,096,270</td> <td>10,030</td> </tr> <tr> <td>2026.1.1.~2026.12.31.</td> <td>517,651,200</td> <td>2,156,880</td> <td>10,320</td> </tr> </tbody> </table> <p>※ 월최저임금액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자료: 고용노동부 고시)</p>	적 용 기 간	사망일시보상금(원)	월최저임금액(원)	시간급 최저임금(원)	2021.1.1.~2021.12.31.	437,395,200	1,822,480	8,720	2022.1.1.~2022.12.31.	459,465,600	1,914,440	9,160	2023.1.1.~2023.12.31.	482,539,200	2,010,580	9,620	2024.1.1.~2024.12.31.	494,577,600	2,060,740	9,860	2025.1.1.~2025.12.31.	503,104,800	2,096,270	10,030	2026.1.1.~2026.12.31.	517,651,200	2,156,880	10,320
적 용 기 간	사망일시보상금(원)	월최저임금액(원)	시간급 최저임금(원)																										
2021.1.1.~2021.12.31.	437,395,200	1,822,480	8,720																										
2022.1.1.~2022.12.31.	459,465,600	1,914,440	9,160																										
2023.1.1.~2023.12.31.	482,539,200	2,010,580	9,620																										
2024.1.1.~2024.12.31.	494,577,600	2,060,740	9,860																										
2025.1.1.~2025.12.31.	503,104,800	2,096,270	10,030																										
2026.1.1.~2026.12.31.	517,651,200	2,156,880	10,320																										
제외사항	- 의료보호기금이나 기타 복지사업(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법정 감면대상자(보훈유공자, 산재보험 등), 병원자체 감면제도(직원할인, 제휴 등), 교육부 건강회복 지원사업 등으로 지급 또는 감면받은 금액 - 재심의의 경우 기존 심의결과 보상 또는 지원 결정으로 기지급된 의료비 - 비급여 항목 중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과다한 검사비 및 치료비 - 제증명료, 비급여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투여 비용 등 *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판정을 받아 장애인일시보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시점 이후의 진료비																												

※ 추가보상의 경우 보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추가 지급 여부 결정됨

※ 보상 및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 및 기타 국가사업에 따라 피해보상 또는 지원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및 지원이 불가함(특별법 제16조)

- 보상금 사후관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 보상금에는 조세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잘못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가능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위로금 등 지원

가. 근거법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제3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나. 지원내용

1) 사인불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 시간근접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 접종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교통, 추락, 익사, 화재, 자살, 타살 등)인 경우 제외

3) 특이경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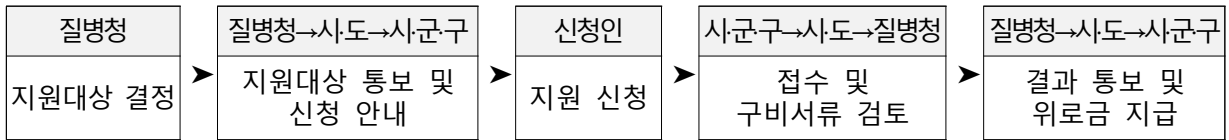
-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업무절차

- (지원 대상 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여 사망에 대한 심의 결과가 ‘기각’인 사례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망 기각 사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업무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심의

- (지원 대상자 통지 등) 지자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 통보·지원 신청 안내
 - (질병청 → 시·도 → 시·군·구) 지원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안내
 - (시·군·구 → 시·도 → 질병청)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 (질병청 → 시·도 → 시·군·구) 신청인에게 지원금 지급 결과 통보



- (통지대상) 지원 대상자(피접종자)의 우선순위 유족

☞ 유족 중 우선순위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

- ▶ 1순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 행방불명 등(증빙 서류 필요)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유족이 각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사망위로금 균등 배분

- * 지원금 수급 대상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우선순위 유족 여부는 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입증 해야함(허위 입증에 대한 책임은 지원금 수급 대상자에게 있음)
- ** 지원금 수급에 대한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통보 시 별도안내

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1. 목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지원체계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 및 가족(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 포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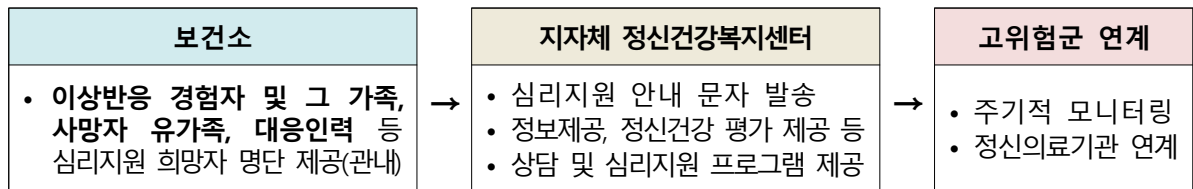
나. 지원절차

-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하여 정신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지원 실시
- 보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 시 간편수신 동의서[서식 5] 내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관련 안내,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을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공하여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 시스템 등록시 문자 수신 동의여부와 함께 정보제공 동의여부 표기

- 중증 사례 여부 구분 없이 보건소에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을 제공하되,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례 발생시 별도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로 연계 의뢰

< 이상반응 심리지원 제공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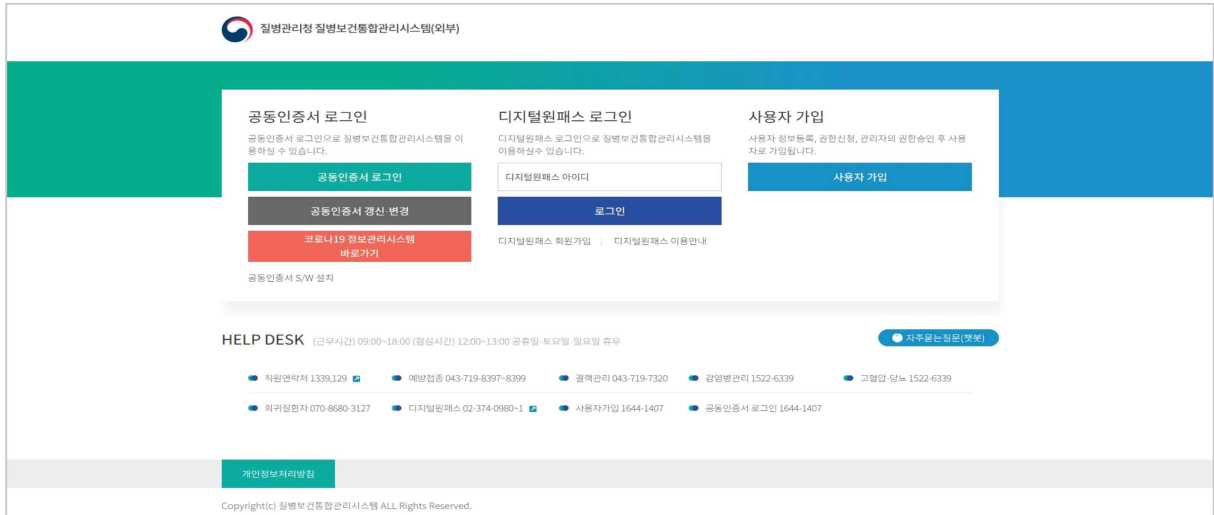


- 그 외 피해보상 미신청자의 경우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 24시간 운영) 등 안내

Ⅲ.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전산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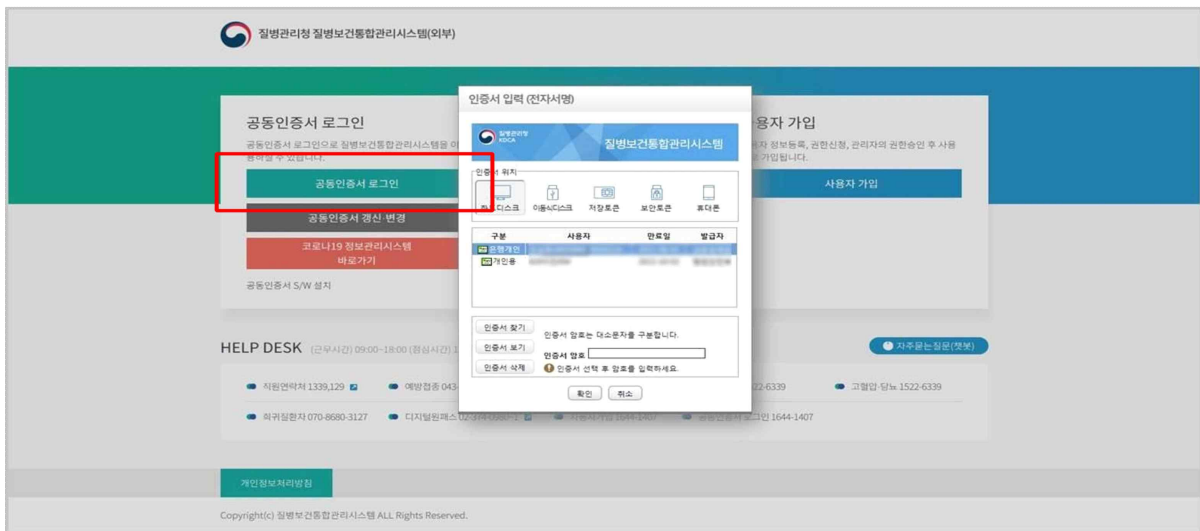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가. 사이트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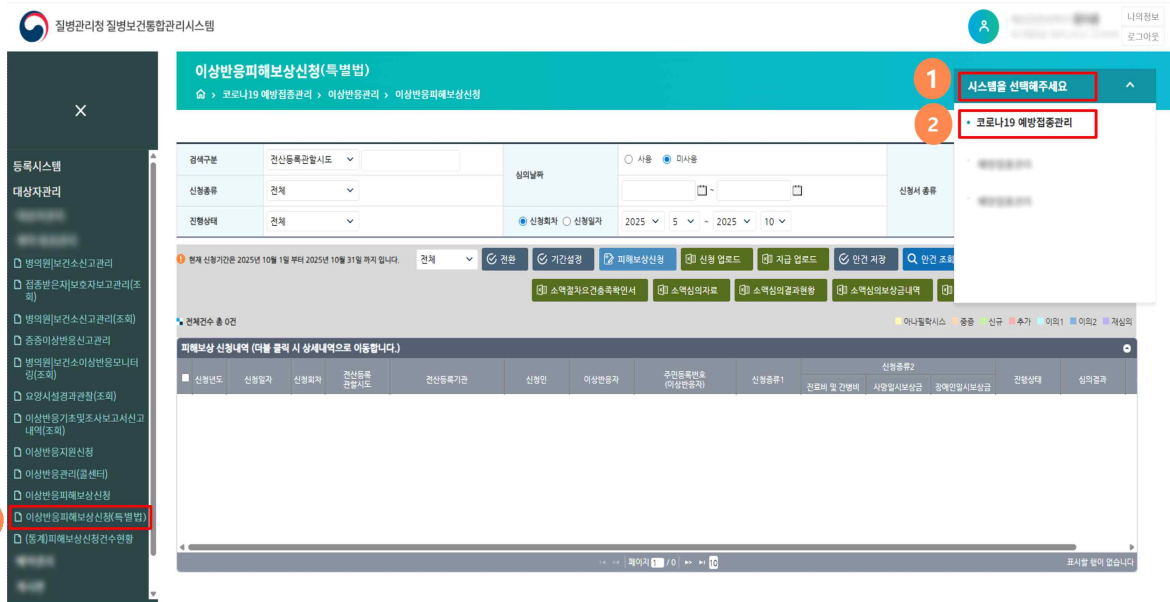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 접속합니다.

나.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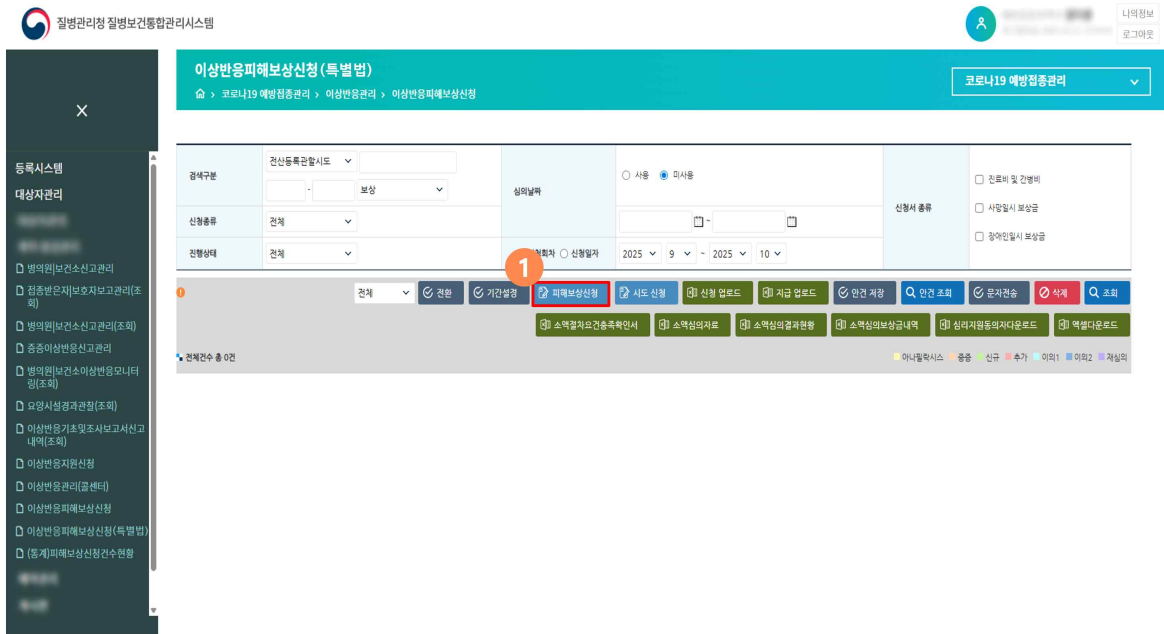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기존에 등록된 인증서 선택 후 암호 입력->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다. 메뉴 선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시스템 선택(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 클릭) →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 이상반응관리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을 클릭합니다.

라.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1 (보건소)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 화면입니다.

1) '피해보상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건소에서만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2 (보건소)

- 2) 이상반응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 3) 피해보상 신청하는 이상반응 신고 건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 ※ 이상반응 신고·조회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3 (보건소)

No	서류명	제출여부	첨부파일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또는 이의신청서 1부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함)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3	(선택)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4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5	진료비 상세내역 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6	의무기록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7	(선택)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조사에 대한 동의서 1부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 4) 보상신청 종류, 인적 정보 및 질병코드, 진료비/간병비/장제비를 입력합니다.
- 5) '구비서류' 버튼 눌러 체크리스트를 선택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피해보상 신청을 완료합니다.

사. 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4 (시·도)

시,군,구
반려

시,군,구 구비서류
시군구 구비서류

반려서류
반려서류

시,도

역학조사 결과

첨부파일

시도 구비서류

시도구비서류

시도 메모 (필요의견)

*심의번호		중증심의번호		보상심사일	
*심의수준1	선택	*심의수준2	선택	보상확정일	
*심의금액	총금액	삭감액	진료비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장애인일시보상금	
*심의결과	심의내용입력				
삭감내용 및 기타사항					
검토내용					

시·군·구에서 제출한 서류와 시스템에 올린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시·도 역학조사 결과를 '첨부파일' 버튼을 눌러 업로드합니다.

아. 계좌정보 입력 (보상 확정 시)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 상세보기

검종원시	검종명	차수	제조회사	제조번호	백신명	유효기간	검종부위	검종방법

이상반응 진단일	진단기관명	이상반응 신고일
이상반응 발생일시	진단기관지정번호	전화번호
이상반응 발현시간	담당(환) 의사명	면허번호
주소	입원여부 <input type="checkbox"/> 외래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입원	계좌정보 계좌정보 보상확정시 입력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미지급 <input type="radio"/> 지급	보상금	

계좌정보

연번	대상자	신청자(발정대리인)	계좌번호	비고	파생첨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1			구분		

+ 행 추가 - 행 삭제

저장 초기

이의신청

*해당검종피해보상 심의결과 오지 입력과 오지

이의신청의 사유 (이의신청 기재란 부족)

*결과통지를 받은 날

시,군,구
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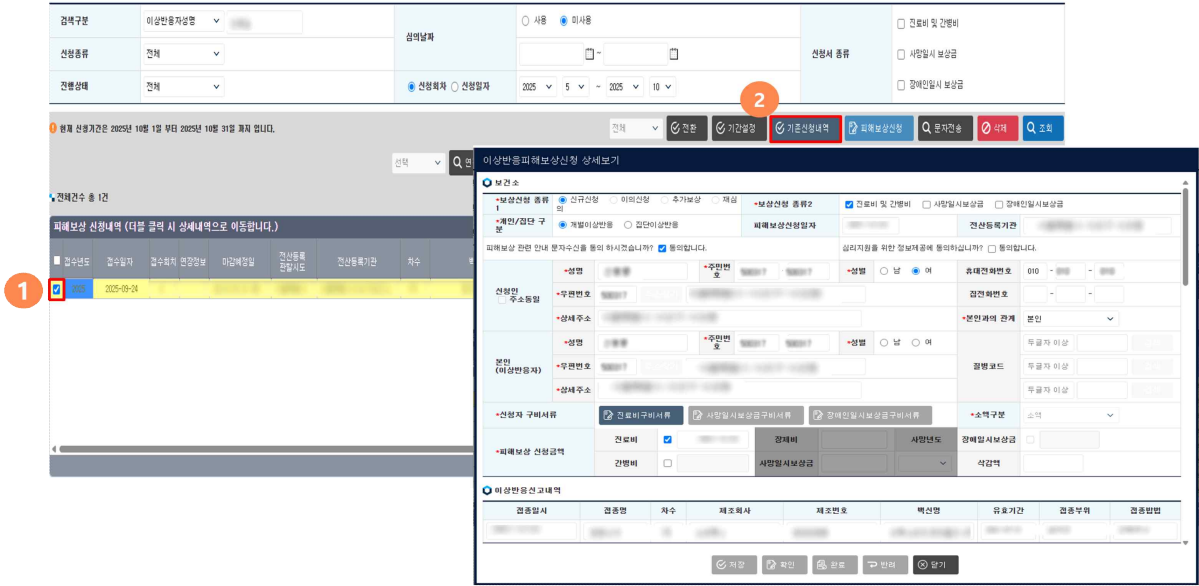
시,군,구 구비서류
시군구 구비서류

반려서류
반려서류

저장
확인
완료
반려
닫기

- 1) '계좌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 2)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 보상이 확정된 건만 계좌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 신청내역 조회 (참고)



- 1) 해당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 2) '기존신청내역' 버튼을 눌러 특별법 이전 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 재심의의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차. 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참고)

보건의료 *보상신청 종류 1 <input type="radio"/> 신규신청 <input type="radio"/> 이의신청 <input type="radio"/> 추가보상 <input checked="" type="radio"/> 재심 <input type="radio"/> 심의정정 *개인/집단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개별이상반응 <input type="radio"/> 집단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안내 문자수신을 동의 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보상신청 종류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료비 및 간병비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보상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일시보상금		*피해보상신청일자 접수일자		전선등록기관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소동일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번호 *우편번호 *상세주소		*성별 <input type="radio"/> 남 <input checked="" type="radio"/> 여 *휴대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													
이상반응신고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접종일시</th> <th>접종명</th> <th>차수</th> <th>제조회사</th> <th>제조번호</th> <th>백신명</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접종일시	접종명	차수	제조회사	제조번호	백신명						
접종일시	접종명	차수	제조회사	제조번호	백신명																		

- 1) 신청일자 지정 등록이 가능하도록 '피해보상신청일자' 기입란이 추가되었습니다.
- 2) 연장 안내 문자 전송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민원인이 간편 수신 동의한 경우에만 전송 가능합니다.
- 3) '보상신청 종류'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침에 따라 적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연장통지 관련 문자 발송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

※ 기본설정

피해보상 신청시 문자수신 동의한 분들께만 문자전송, 핸드폰 번호 미기입시 미전송

이상반응피해보상신청(특별법) 상세보기

보건소

*보상신청 종류1 신규신청 (선택) / 이의신청 (선택) / 추가보상 (선택) / 재심 (선택) / 심의정정 (선택)	*보상신청 종류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료비 및 간병비 /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보상금 / <input type="checkbox"/> 장애일시보상금	
*개인/집단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이상반응 / <input type="radio"/> 집단이상반응	피해보상신청일자 2025-11-05	전산등록기관 [정보]
① 피해보상 관련 안내 문자수신을 동의 하시겠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접수일자 2025-11-05	심리자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성명 [정보]	*주민번호 [정보]	*성별 <input type="radio"/> 남 / <input checked="" type="radio"/> 여
휴대전화번호 010 - [정보] - [정보]		

1) (보건소) 문자수신 동의 건인 경우 개인별 신청화면에서 피해보상 문자수신동의 체크

검색구분 신청인성명 ②	신청종류 전체	진행상태 전체	신청일자 2025-11-05	신청서 종류 <input type="checkbox"/> 진료비 및 간병비 /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시 보상금 / <input type="checkbox"/> 장애일시 보상금
-----------------	------------	------------	--------------------	--

현재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전체 | 관문 | 기간설정 | 기존신청내역 | **피해보상신청** | **문자전송** ④ | 삭제 | 조회

연장구분변경 | 소액결차요건종족확인서 | 소액심의자료 | 소액심의결과현황 | 소액심의보상금내역 | 심리자원동의자다운로드 | 엑셀다운로드

전체건수 총 1건

피해보상 신청내역 (다블 클릭 시 상세내역으로 이동합니다.)

검수번호	검수일자	검수회차	연장정보	마감예정일	전산등록 관할시도	전산등록기관	차수	제조회사	신청인	이상반응자	주민등록번호 (이상반응자)	신청종류1	신청종류2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	2025-11-05	11	연장	26/05/05 (D-34)								진료비 및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③ (선택) | ⑤ (연장)

2) (질병관리청) 신청인별 조회

3) (질병관리청) 연장 상태 건 선택

4) (질병관리청) 문자전송 누르기(문자 수신 동의 건에만 발송, 개인당 1건만 발송)

5) 연장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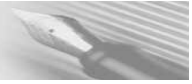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 연장정보가 ‘연장’ 으로 표시된 경우 연장통지 완료 상태임

* 문자 발송일자는 엑셀다운로드-문자전송여부의 전송일자로 확인 가능

서 식

서식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또는 사망자	성명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성별	[]남 []여		
	주소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임신부)	[] 출산예정일 : ____년 __월 __일 (또는 [] 마지막 생리일) : ____년 __월 __일						
	[] 신고 시 이미 출산 한 경우, 출산일 : ____년 __월 __일						
예방접종 일시	____년 ____월 _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분						
	(임신부) 재태주수 ____주						
	- 재태주수를 모르는 경우: [] 임신 초기(0-13주) [] 임신 중기(14-27주) [] 임신 후기(28주 이상)						
예방접종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최근 4주 이내에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임신기간 동안 접종한 백신의 종류 및 접종일							
접종일	예방접종 종류 및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연월일)	예방접종 부위	예방접종 방법	과거 접종 횟수
접종 전 특이사항	[] 5세 이하인 경우 ※ 해당 시 접종 전 체온(℃) 출생 체중(kg)						
	[] 선천성 기형						
	[] 그 밖의 기저질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사항	이상반응 발생 일시(년/월/일/시/분)						
	이상반응 진단 일시(년/월/일)						
	이상반응 종류	국소 이상반응	[]접종 부위 농양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심한 국소 이상반응 []연조직염				
		신경계 이상반응	[]급성 마비 []뇌증 혹은 뇌염				
	[]경련 []길랭바레증후군						
그 밖의 전신 이상반응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발열 []관절염 []골염 혹은 골수염						
	[]전신파종성 비세포성감염증 []혈소판 감소 자반증						
	[] 그 밖에 접종 후 4주 이내에 발생한 중대하거나 특이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진행상황	1. 진행 중	[]생명위중	[]입원치료	[]외래치료	[]치료 안함		
	2. 상태종료	[]완전회복	[]경미장애/후유증	[]영구장애/후유증	[]사망		
	3. 모름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면허번호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서명 난은 컴퓨터통신 이용 시에는 생략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종류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 부위 농양
 -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 세균성: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 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의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됨. 다만, 위의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하여 세균성 농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무균성: 세균성 감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 림프선염(화농성림프선염 포함)
 -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cm 이상(어른 손가락 굵기 정도) 커지거나
 -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구멍이 형성된 경우
 - 거의 대부분 비씨지 접종에 의하여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겨드랑이)에 나타남
- 심한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를 중심으로 발적(發赤), 부어오름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어오름
 - 통증·발적·부어오름·경결(硬結)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연조직염
 - 피부에 발생하는 급성, 감염성, 팽창성 염증으로 접종부위 통증, 홍반, 부기,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 신경계 이상반응

- 급성 마비
 -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일~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 뇌증(腦症)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소견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① 뇌전증 발작
 - ② 1일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 ③ 1일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의 발생 가능 기간이 다음과 같이 다름
(예: DT, DTaP, DTP, DTP-Hib 등은 72시간, MMR은 5~15일)
- 뇌염
 -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염증의 증후를 동반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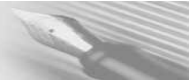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 경련
 - 경련이 수 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 길랭바레(Guillain-Barre)증후군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마비 발생 당시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 해리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3. 기타 전신 이상반응

- 알레르기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 ①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 ② 천명(쌩쌩거림)
 - ③ 안면 부어오름 또는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급성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①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천명(쌩쌩거림)과 호흡곤란
 - ② 후두 연축/부어오름
 - ③ 한 개 이상의 피부 병변(예: 두드러기, 안면 부어오름, 전신 부어오름)
-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어오름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 발열
 - 직장 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 관절염
 -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 골염 혹은 골수염
 - 비씨지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개월~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하여 발생한 골감염임
-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 비씨지 접종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으로 Mycobacterium bovis 비씨지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 혈소판 감소 자반증
 - 혈중 혈소판의 수가 50,000/mm³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자가면역질환 등의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 우러야 함
 - 주로 홍역 백신(MMR)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7~30일 이내에 증상 출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보고서

□ 주요 내용

○ 조사 주체: 시도

이름	주민번호	접종당시 나이(세)	접종 기관	접종일시				접종 부위
				년	월	일	시	

백신 종류	차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통기간
코로나19					

- 기저질환 및 의학적 과거력:
- 피해발생 경위
 - 최초 증상 (기저질환자의 경우 최초 증상란에 최근 기왕력 및 예방접종 전의 상황을 포함하여 작성)
 - 증상(발생일시) (이상반응 발생 부위, 동반 증상, 지속 시간(기간), 통증의 정도(강도) 등을 기재)
 - 백신 접종~증상 발생까지 걸린 시간:
 - 신고경위
 - 임상경과 (응급실 내원 및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의 경과 및 치료 상황을 작성)
 - 조사 당시 임상 결과[완쾌, 회복 중, 입원(일반, 중환자실), 사망, 영구적 장애 등]

□ 주요 검사 소견 (주요 검사소견 등 의무기록에 기반하여 작성)

- 임상 진찰 소견
-
- 실험실적 검사 소견
-
-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은 이상소견이 있을 시 사진 첨부 또는 판독 결과를 자세히 인용)
-
- 기타 (피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 사례 등의 경우 병변에 대한 사진 자료가 있을 시 첨부)

□ 검토결과

인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품질의 문제(보관 상태 등) : ○ 예방접종 과정상 오류 : ○ (추정) 진단명(*질병 코드) : ○ 진단기준 부합(Brighton Collaboration) : *해당사항 없을 경우 기입 불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만족함(level 1,2,3)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 않음(level 4,5)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 (질환의 알려진 주요 원인, 선행 증상, 검사 결과 등) ○ 알려진 이상반응 해당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 개연성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접종과 증상 발생 시간(관련 증상) : 일 시간 분 ○ 관련 문헌 검토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COVID-19 vaccines technical documents of 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on Immunization(SAGE) · Global Advisory Committee on Vaccine Safety(GACVS) guideline · National Academy of Medicine(NAM) Evidence Review of the Adverse Effects of COVID-19 Vaccination and Intramuscular Vaccine Administration (2024) · Systematic review, case report 등 신뢰도 기반하여 근거 문헌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재
잠정결론	<input type="checkbox"/> Definitely related, Definite(1), <input type="checkbox"/> Probably related, Probable(2), <input type="checkbox"/> Possibly related, Possible(3) <input type="checkbox"/>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Indeterminate(4-1) <input type="checkbox"/> Probably not related, Unlikely(4-2) <input type="checkbox"/> Definitely not related(5) (※내용 기술)
	<input type="checkbox"/> Unclassifiable (※내용 기술)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외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기타 위의 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의무기록에서 찾기 어려운 경우 환자, 보호자, 담당의사 면담 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

※ 바탕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본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예방접종의 내용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 장소			접종 일시			
진료비				간병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도지사를 경유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2.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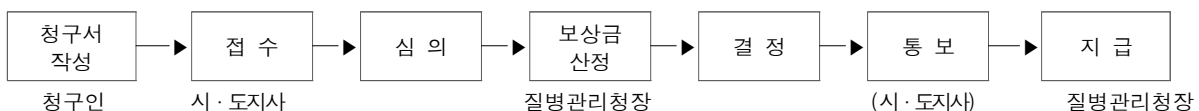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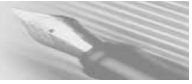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위임장

위임인 (보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자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 사유	
위임내용	[]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위 위임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의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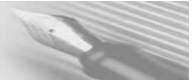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위임인(보상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인(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간편수신 동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집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피해보상 진행 상황 안내 및 심리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성명,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집/휴대전화), 전자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결정기간 연장 사실과 이유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라 구축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를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집/휴대전화)

*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리지원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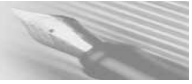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예

 아니오

본인(대리인) :

(서명)

질 병 관 리 청 장 귀 하



의견제출서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접종자와의 관계
	주소	
피접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인과의 관계 (본인, 담당의료인, 해당전문가 등)
	주소	
의견제출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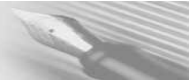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신청서

청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접종자와의 관계
	주소	
피접종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청취 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내용	의견 청취 신청사유	
	의견 청취 내용	

의견 청취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 청취를 위해 의무기록,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청취대상에게 제공하는 것에 예 아니오
동의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청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 청취 내용에는 의견청취 대상자로부터 들어야 할 의견의 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기피신청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접종자와의 관계	
피접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기피신청 대상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신청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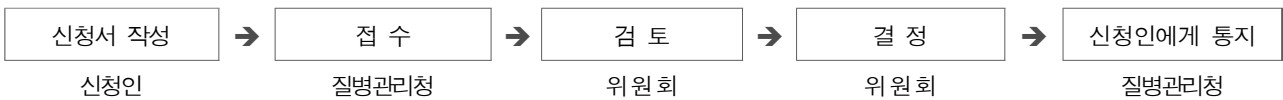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소명 자료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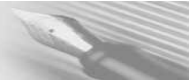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신청이유”란에는 기피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불만이나 주관적 추측이 아닌 심의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2. 기피사유가 관계 법령 및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관련된 소명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료기관 진료비 내역

홍길동

진료기간	진료기관명	진료구분	진료비총액	공단부담금	환자부담총액	정액간병비	삭감액*	보상금
계			3,933,104	2,260,580	1,672,510	300,000	200,000	1,772,510
2022-06-11	A병원	외래	825,339	413,841	411,490	-	-	411,490
2022-06-11 ~06-29	B병원	입원	3,004,110	1,785,634	1,218,470	300,000	200,000	1,318,470
2022-06-30~ 2022-08-31	C병원	입원 및 외래	10,800	0	10,800	-	-	10,800
2022-09-14	A병원	외래	64,355	41,105	23,250	-	-	23,250
2022-11-15	B병원	외래	28,500	20,000	8,500	-	-	8,500

보상금 = 환자부담 총액 + 정액간병비 - 삭감액

※ 삭감액: 병실차액, 보호자식비, 이상반응과 관계없는 진료비 등
(병실차액은 심의 후 지급 여부 결정)



백신 보관 장비 온도기록지

※ 접종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백신 보관 장비 1대당 1장씩 작성 필요

접종기관명						보관장비명			예) 접종실 냉장고 ②		
점검기간			2021. 5. 1. ~ 5. 31.			백신관리담당자			홍길동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 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일자	시간	보관장비 내 부온도(°C)	실내온도 (°C)	점검자		
1	오전 10:00	6.2°C	22.5°C	홍길동	16	오전 11:30	4.7°C	27.0°C	고길동		
	오후 17:30	5.3°C	20.0°C	홍길동		오후 16:30	7.0°C	25.8°C	고길동		
2	오전				17	오전					
	오후					오후					
3	오전				18	오전					
	오후					오후					
4	오전				19	오전					
	오후					오후					
5	오전				20	오전					
	오후					오후					
6	오전				21	오전					
	오후					오후					
7	오전				22	오전					
	오후					오후					
8	오전				23	오전					
	오후					오후					
9	오전				24	오전					
	오후					오후					
10	오전				25	오전					
	오후					오후					
11	오전				26	오전					
	오후					오후					
12	오전				27	오전					
	오후					오후					
13	오전				28	오전					
	오후					오후					
14	오전				29	오전					
	오후					오후					
15	오전				30	오전					
	오후					오후					
					31	오전					
						오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간 연장 통지서

피해보상 청구인		생년월일		피접종인과의 관계	
접수일시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통지합니다.

심의 차수						
피접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접종정보	
심의 결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내용 및 보상 결정의 근거와 구체적 이유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피접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결과 주요 내용				
결과 통지일		년 월 일		
이의신청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피접종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질 병 관 리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있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비 고	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내용을 적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의 차수						
피접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접종정보	
심의 결과						
안내사항	<p>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직인

부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Q. 예방접종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필요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Q. 이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했었고 이의신청 2회차까지 결과를 모두 받았었는데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일('25.10.23.)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최대 횟수(이의신청 2회차)까지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전국민은 모두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6.10.23.)까지 **1회의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Q. 간병비는 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었는데, 아직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단, 기간의 계산 시 초일불산입) 또는 재심의일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26.10.23.)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 진단일을 해당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 보게 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그리고 진단서 등 제증명료도 지급되나요?

-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없는 과도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비타민 주사 등), 물리치료, 직원할인, 제휴감면액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 금액에서 삭감됩니다.

*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Q.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 등 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보상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 신청 후 보상 결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후로도 동일한 상병으로 인한 진료비가 발생되어 추가보상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다닌다면 추가보상을 최대 몇 번까지 신청가능한가요?

- 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결정을 받은 경우, 이후 추가보상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보상 신청 시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은 보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Q.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백신별 피해보상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 '24. 5. 1.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기 이전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후 기간이더라도 증상과 관련하여 원인감별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검사라고 인정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Q. 유족이 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할지,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시, 반드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보상청구를 위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예: 사망일시보상금 청구 시,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등 특별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 제출하고 의무기록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상청구를 위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피해보상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내용을 입증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 동료가 대신 해주어도 되나요?

- 진료비 및 간병비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특별한 사유(예: 질병, 장애 상태로 거동불가)가 있는 경우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서식 6]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음
 -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인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 만약 친권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친권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기본증명서(상세)가 추가로 필요함
- 더불어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에는 보상금 우선수령 대상자인 선순위 유족이 원칙적으로 보상신청권자가 되며, 후순위 유족 등 피해보상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청권 없음’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피해보상(재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보상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을 위해 심의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되지 않음
 - ※ 의학적 판단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 시, 해당 심의부터 차회 심의까지의 기간은 불산입, 보상금액, 심의운영 등 의학적 판단 외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심의·의결 보류는 결정기간에 산입

Q. 진료비 및 간병비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서류를 질병청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서 제출과 함께, 진료비 신청 시 제출한 의무기록 이후부터 사망까지의 의무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전 진료비 신청 건은 보상대상자의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기존 제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 * (보건소 및 시·도 조치사항) 진료비 신청 건의 경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피해보상 신청내역 반려 처리요청(유선 연락 후 공문 발송 必)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신용불량자라는 등의 사유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힘든 경우,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기 힘든 사유와 해당 보상대상자의 정보를 질병청으로 통보해주시고, 보건소 계좌로 보상금을 받아 보상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령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수령확인증을 공문을 통해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Q.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후 보상 결정을 받았는데, 보상대상자인 선순위 유족 2명 중 1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1명이 보상금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 안됩니다. 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은 균등 배분하여 지급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불가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보상거부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보상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작은 이유로 거부하는 등 여러 사유로 보상금을 거부하는 경우, 질병청에 해당 내용과 대상자를 통보해주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상 계좌정보에 ‘보상거부’ 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또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신청을 했을 때와 이후 이의신청을 할 때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청구인) 현 주소지에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건소) 이전 주소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신청자 주소지를 현 주소지로 변경하시면, 이관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건이 이전에 시·도 자체심의 되었던 건인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시·도에서

보관 중인(시도완료 건) 의무기록지를 질병청으로 함께 보내주시게 되는데, 신규신청 시와 이의신청 시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신청인의 이전 주소지 소속 시·도에서 신청서류 사본을 받아 이의신청서와 함께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주소지 변경 절차) ¹⁾시스템 로그인 후 → ²⁾오른쪽 상단의 ‘시스템을 선택해주세요’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 선택 → ³⁾왼쪽 메뉴에서 ‘질문과 답변>예방접종시스템 관련 문의’ 를 통해 주소변경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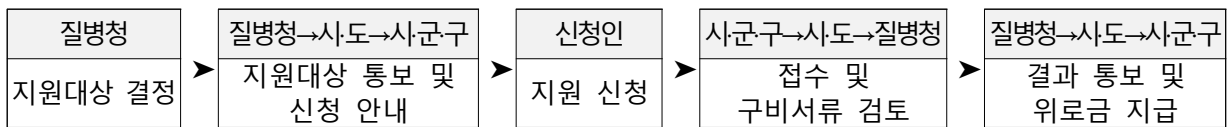
Q.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인이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인이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개명 전, 개명 후 이름 기재,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내용 기재)을 첨부하여 질병청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위로금 지원 관련**

Q. 사망위로금도 피해보상처럼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보상(사망일시보상금)을 신청한 사망 기각 사례 중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개별 안내되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되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신청인 자격,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결정을 통보(지자체)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코로나19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인불명·시간근접등에 관한 사망위로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코로나19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인과성 확인 또는 추정)으로 결정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

- 재심의 결과 사망 관련 보상이 인정되어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사망위로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